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25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 12. 1

다. 상정일자 :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7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로울러스케이트)의 설치 목적 및 개념 정의를 각각 정함.
- 경기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단원의 임용 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훈련, 대회출전 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함.
- 경기부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보수등의 지급근거를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제정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99년 12월 창단된 로울러 스케이트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2001년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는 150백만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파악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